

보 상 계 획 공 고

우리 군에서 보상을 시행하는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(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)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05. 02.

예 천 군

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(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)
- 나. 위치 :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일원
- 다. 사업내용 :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경관개선, 지역역량강화
- 라. 보상범위 : 토지(19필지 10,533㎡), 지장물(1건) 세부내역은 붙임참조.
- 마. 시행자 : 예천군
- 바. 사업기간 : 2014. 01 ~ 2016. 12. 31

2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기간 : 2016. 05. 02 ~ 2016. 05. 17
- 나. 열람장소 : 예천군 건설교통과
- 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: 예천군 건설교통과에 비치
- 라. 이의신청 :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3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시기 :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(2016. 06. 이후, 개별 통지)
- 나. 보상방법 : 개인별 현금 보상 (계좌 입금)
- 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공고(통지) 및 열람 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
⇨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 ⇨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 ⇨ 공탁
- 라. 보상금 산정 :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한 금액

4. 감정평가업자 선정

- 가.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선정방법 : 3인을 선정하되,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
- 다. 추천기한 :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
- 라.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

5. 기 타 사 항

- 가.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.
- 나.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장소, 보상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- 다. 편입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라.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,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마. 편입면적은 대한지적공사 확정 측량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.
- 바. 열람 및 이의신청,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(☎ 054-650-65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